

귀하는 고용주를 통해 비영리 단체에 기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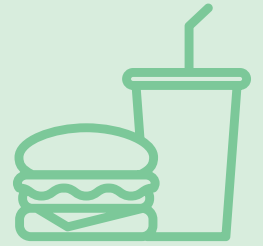
뉴욕 시의 Fast Food Deductions Law(패스트푸드업 공제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업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의 급료에서 자발적인 금액을 공제해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DCA)이 발행한 등록 서한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송부하려는 고용인의 요청을 존중해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각 뉴욕 시 작업장마다 고용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의 보장을 받는 패스트푸드 근로자

뉴욕 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중 최소한 하나를 수행하는 고용인:

- 고객 서비스
- 조리
- 음식 또는 음료 준비
- 외부 배달
- 보안
- 물품 또는 장비 재고
- 청소
- 정기 유지보수 작업

이 법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처벌하거나 벌칙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고용인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이 있을 시 근로자는 즉시 OLPS에 이를 알리십시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발적 공제 및 기여 승인

고용주가 확실히 귀하의 급료에서 공제해 이 기여금을 비영리 단체에 송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귀하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서명
- 귀하의 이름과 주소
- 금액, 빈도 및 기여 시작일
- 해당 비영리 단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그러한 공제와 기여가 자발적 의사이며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술

공제는 반드시 고용주가 서면 승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후 첫 번째 급여 기간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주당 \$3 미만의 공제를 하거나 급여 기간당 1회보다 많이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 귀하가 서면 승인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서면 승인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해당 비영리 단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급여 명세서에 공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 귀하의 승인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그러한 공제에 대해 귀하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승인의 철회

자발적 공제 및 기여를 종료하려면, 반드시 해당 비영리 단체에 서면 철회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에서 해당 철회서를 고용주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공제는 반드시 고용주가 해당 비영리 단체로부터 서면 철회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후 첫 번째 급여 기간 이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보 받아보기

해당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귀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단체명, 주소, 이메일, 웹 사이트(있는 경우), 전화번호 및 승인과 철회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
- 단체의 사명, 시행 사업 및 중점 분야
- 해당 비영리 단체의 고용인이었거나 현재 고용인으로 소득이 \$100,000를 초과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중역 및 이사진 명단
- 재정 정보
- 현재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라는 증빙

비영리 단체로서 귀하에게 잘못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 단체는 기여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기여금을 받도록 승인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 단체에 대한 기여금: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전국노사관계법)에 정의된 노동 단체, 공무원법 201조 5항에 정의된 고용인 단체 및 노동법 701조 5항에 정의된 노동 단체는 20-1310조 b항에 의거하는 본 장 하에 송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2017년 Local Law(지방법) 98).

민원 제기

DCA의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OLPS)는 Fast Food Deductions Law와 기타 뉴욕 시 근로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OLPS에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nyc.gov/dca로 이동하거나 311번(뉴욕 시 외는 212-NEW-YORK)에 전화 후 "Deductions Law"를 요청하십시오. OLPS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OLPS는 조사를 완수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OLPS 민원 제기와 법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OLPS 연락 방법

nyc.gov/dca를 방문하거나 FWW@dca.nyc.gov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311번에 전화 후 "Deductions Law"를 요청하십시오.